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367호
의결 년월일	2009. 1. 22. (제149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1. 19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개정이유

- 현행 시정질문·답변 제도의 일부 개선을 통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의 질적 향상과 의사일정 단축 등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
- 시정질문 시간과 답변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현행 시정질문(1일차/일괄질문) →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(2일차/일괄답변·일괄질문) →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(3일차) 순서의 총 3일차에 걸친 시정질문·답변 제도를 시정질문(1일차/일괄질문) →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보충질문(2일차) 순으로 일정을 단축하고 보충질문 방법을 개선함.(안 제74조제3항)

나. 본질문(일괄질문) 및 보충질문(일문일답)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되, 그 시간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며,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 함.(안 제74조제4항)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. 이 경우 본질문을 한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후에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,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보충질문의 시간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4조(시정질문·답변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<u>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4조(시정질문·답변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. 이 경우 본질문을 한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후에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,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보충질문의 시간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